

『구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신용하 의원 외 11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민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, 기능(안 제1조~제3조)
-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신청 및 승인,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진행 및 결과의 반영 등(안 제7조~제10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의원 혹은 위원회가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을 개최 시,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토론회 등의 개최를 준비·지원하고자 마련된 조례안으로 그 취지와 계획수립을 하는 것에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됨.
- 일정한 서식의 별지를 사용하여 토론회 등의 개최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, 관련된 지원과 예산편성 등은 의회사무국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또한,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반영하도록 하였음
- 기타 각종 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5. 참고사항

- 타 시군 조례운영 현황

지방의회			비고
소계	광역시	기초	
68개	41개	27개	